

5 주거건축물 인증기준 -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



◆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기준 (2020.04.30 개정 및 시행)

- ✓ 가. 기계환기설비 성능기준 마련
 - 폐지된 고효율기자재 인증과 동등한 **성능기준(KS)**을 도입, 녹색기술인증도 추가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
- ✓ 나.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시험조건 마련
 -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방지를 위해 프리히터 설치 이외에도 **결로시험조건(KS)**을 도입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, 혼합형 환기설비의 경우에도 열회수환기장치가 적용된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도록 예외 규정 삭제

분류	시험조건	평가기준
유효환기량	KS B 6879 부속서 A	시험한 측정치가 표시용량 (KS B 6879 3.2)의 90% 이상
열교환효율	KS B 6879 부속서 B	냉방시 : 45% 이상 난방시 : 70% 이상
에너지계수	KS B 6879 부속서 B	냉방시 : 8.00 이상 난방시 : 15.00 이상

분류	실내조건		실외조건		운전 상태	시험 시간	
	건구온도 (°C)	습구온도 (°C)	건구온도 (°C)	습구온도 (°C)			
시험 조건	하계 (냉방)	27.0±0.3	19.0±0.3	35.0±0.3	24.0±0.3	운전	2시간
	동계 (난방)	25.0±0.3	13.9±0.3	- 15.0±0.3	-	운전	2시간
평가	시험품 내측에 결로수의 적하와 실내측 본체 외표면의 결로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결로 발생이 없어야 함						

✓ 다. 평가기준 문구 수정

구분	평가내용	평가기준
4. 환기설비 성능검증	4.1 적정 환기 효율	• 각 실의 환기량이 환기기준의 75% 이상 유지
	4.2 TAB의 시행	• 대한설비공학회 “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(TAB) 기술기준 ”에 적합하게 시행할 것

- ✓ 라. 자체평가 이행 확인서 제출 대상 명확화
 - 사용검사 신청 시 자체평가 이행확인서 제출 대상을 ‘사업승인권자’에서 ‘사용검사권자’로 명확화

5 주거건축물 인증기준 -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



◆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요

- ✓ 건강친화형 주택 :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
- ✓ 의무대상 :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, 리모델링하는 경우 [주택법 제21조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]
- ✓ 평가방법 : 의무(최소) 기준을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1호 중 2개 이상, 2호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하여야 함

